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민원 사례-

2019. 11.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1. 방류벽/감지기

##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13조 제1호.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그 집수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1. 방류벽/감지기

**(질의)** 실외 방류벽 이격거리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지만 감지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추가'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법적 기준에 따른 감지·경보설비의 개수(실외의 경우 설비군 둘레 20m 당 1개 이상, 실내의 경우 10m 당 1개 이상)를 설치하고, 그 보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의미. 다만, 기존에도 위의 감지·경보설비 기준 이상 추가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추가 방안으로 인정될 수 있음

**(질의)** 90년 후반 시설로 동일 방류벽 안에 저장탱크와 제조사용시설이 함께 있음. 지금 까지 사고없이 사용하고 있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사용 가능한지?

**(답변)** 제조 사용시설을 방류벽 밖으로 이설하여 제조사용시설에 적합한 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시기 바람

# 1. 방류벽/감지기

**(질의)** 2014년 이전 착공 저장탱크 주변에 약 0.3m 정도 방류벽 있음. 용량 110% 미만, 이격거리 (1.5m, 탱크 높이 1/2, 1/3) 부족, 최소높이(0.5m) 미흡한 상태  
누액감지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 경우 추가 증설없이 기존 방류벽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되는지?

**(답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실외 저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방류벽의 거리, 용량, 높이 기준이 인정됨.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로서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

## 2. 하역장소 집수조 용량

###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13조 제2호** 액체상체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그 집수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2)1 방지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1) 방지턱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송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길이 이상일 것
- (2) 방지턱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하역량(운송차량의 탱크용량을 말한다. 이하 2)-2(3)에서 같다)의 1/4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1) 트렌치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송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길이 이상일 것
- (2) 트렌치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 (3)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은 **적재·하역량의 1/4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2. 하역장소 집수조 용량

**(질의)** 유해화학물질을 적재, 하역 하는 시설에 방유턱 등을 설치해야 하고 그 용량은 1/4 이상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집수정을 통해서 폐수처리장(폐수장 용량은 충분)으로 연결되어 1/4 기준을 만족한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트렌치 및 집수정 용량을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유해화학물질 적재·하역장소에 설치하는 방지턱 및 트렌치(집수조 포함)가 운송차량의 최대용량의 1/4 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집수조는 물질처리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시설로, 일반적인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정 안됨

### 3. 방류벽 내 펌프, 저장탱크

####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13조 제1호.**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그 집수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8) 방류벽 내에는 저장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등의 필수설비와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외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2조 제3호.** " 저장탱크 " 란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어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말한다.

### 3. 방류벽 내 펌프, 저장탱크

(질의) 현재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이송펌프는 방류벽 내부에 설치되어 사용 중. 해당 펌프를 방류벽 외부로 이동 설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 인화성, 자연발화성, 폭발성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펌프의 경우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로 판단하여 방류벽 내부에 설치할 수 있음

(질의) 당사는 가성소다탱크 신규설치 예정. 신규탱크에 50% 가성소다를 입고하여 탱크 내에서 물과 희석하여 약 30%로 사용하고자 함. 해당시설을 제조사용시설로 간주해도 되는지?

(답변)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더라도 입하의 목적으로 저장탱크로 분류됨  
"저장탱크" : 유해화학물질의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어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를 의미.



## 4. 내진설계

###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9조 제2호** 실외 저장시설은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 확인서를 갖춘 경우

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2)-1 저장능력 5톤(인화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 m<sup>3</sup>(인화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1000 m<sup>3</sup>) 이상의 저장시설과 그 지지물 및 기초는 KGS GC203(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등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설계·제작·설치하고, 그 성능을 유지한다.**

## 4. 내진설계(1)

**(질의)** 저장능력 5톤(가연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m<sup>3</sup>(가연성화학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1000m<sup>3</sup>)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에서 저장능력은 해당 설비의 "설계용량(m<sup>3</sup>) x 비중"을 고려한 값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답변)** 질의하신 내진성능의 저장능력 산정은 "시설의 설계용량(부피) x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질량/부피)"으로 산정

**(질의)**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대책법 적용함에 있어 대상시설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기준을 우선 적용하면 되는지?

**(답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1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내진설계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대상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내진성능에 관한 건축법 기준은 건축법 제5장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32조, 국토교통부령 제555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에서 확인 가능

## 4. 내진설계(2)

**(질의)** 검사 대상 시설의 건축물은 1985년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당시 건축법 등의 내진성능 확보에 대한 대상이 아니었음. 건축 허가 당시 건축법상 내진성능확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면제되는 사항이 맞는지?

**(답변)** 기존 취급시설로서 건축물 착공 당시의 내진성능을 갖추었음을 증빙한다면(건축허가대장 등)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 5. 지반조사

##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5조 제7호**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설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기관(기술사)의 지반조사 보고서나 기초공사 응력 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5. 지반조사

**(질의)** 지반조사, 기초공사, 고정조치의 시설기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시설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 공정안전보고서(PSM) 결과가 포함되는지?

**(답변)** 공정안전보고서(PSM)은 인정되지 않음

## 6. 설비 상호간 거리

###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6조 제2호. 저장탱크 상호간에는 0.5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가. 설비의 정비 및 보수 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시설로서 부식손상·노후화 여부점검 등의 안전점검(다만, 설비 또는 벽과 맞닿는 경우 제외)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6. 설비 상호간 거리

**(질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설비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 공정안전보고서(PSM) 결과, 위험물법의 허가증도 포함되는지?

**(답변)** 공정안전보고서(PSM)은 인정되지 않음.

위험물 허가증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서 등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인정

# 7. 비파괴 시험

##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7조 제5호**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내부 감시 시스템(압력계, 감지기 등)을 통한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위험도기반검사(RBI)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 7. 비파괴 시험

**(질의)** 0.2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해 20%이상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허가는 받았는데, 결과서는 없는 것 같음. 위험물법 허가증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허가증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서 등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인정

## 8. 배관 내압시험

### 안전원 고시 제2019-7호

**제7조 제7호.** 설계압력이 0.2 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출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가. 내압시험을 위하여 구분된 구간과 구간을 연결하는 이음관으로서 그 관의 용접부가 방사선투과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 최고사용압력 1MPa 이하의 배관 중 이음매 없는 1인치 이하의 배관을 사용압력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 경우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두께 측정, 경도측정, 열화상 점검, 기밀시험 등의 시험실시 결과서를 하나 이상 갖춘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공급차단 인터록 체계 등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8. 배관 내압시험(1)

(질의)

1. "주기적"이란 사업장 자체적으로 지침서 등에 6개월, 1년, 2년, 3년 등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면 되는지요?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검사기관에서 권고하는 주기가 있는지)
2. 주기적 두께 측정, 경도측정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자체적인 두께 측정 결과서로 인정 가능한지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의 측정결과서가 필요한지
3. "측정"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 배관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점검이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 1-2. 모든 사업장에 주기적 안전점검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장 자체적인 관리계획을 인정하기 위함. 사업장 자체적(or 위탁)으로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시면 됨
3. 자체점검은 인정되지 않음

## 8. 배관 내압시험(2)

**(질의)** 내압시험 실시하여 위험물 허가는 받았는데, 10년 이상 된 배관이라 결과서는 없는 것 같음. 이 경우 허가증만으로 내압시험 실시한 게 인정이 되는지?

**(답변)** 허가증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 완공검사필증,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결과서 등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인정

# 9. 소량 취급시설

## 안전원 고시 제2018-4호 및 안전원지침 제2019-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 9. 소량기준 대상여부(1)

(답변)

별도의 단위공장이거나 콘크리트 벽 등과 지붕, 출입문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다면 각각 구분하여 소량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방류벽 또는 판넬로 구분된 것은 물리적으로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인정 안됨**

*건축물 벽(콘크리트, 벽돌, 글라스울판넬 등)과 지붕, 출입문 등으로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공간*

(답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서 소량기준을 산정할 때에는 환경부 고시 제2017-245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1 제4호(취급시설별 합산)는 적용하지 않음

(답변)

단위공장 내의 모든 취급시설이 소량기준 미만이라면 소량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받으며, **다만**, 한 취급시설이라도 소량기준 이상이라면 일반 취급시설의 기준을 적용

## 9. 소량기준 대상여부(2)

(질의)

질산을 취급하는 공정을 증설하고자 하는데, 이 공정에서는 250kg의 드럼으로 질산(60%)을 구매하여 현장 (사용시설)에 두고 드럼에서 펌프로 소량 (1batch 15kg)을 공정에 투입 예정. 이 경우에 질산의 소량기준 (일일사용, 취급량)이 200kg 인데, 드럼도 설비로 보고 장외영향평가를 표준으로 해야 하고, 설치검사도 소량기준이 아닌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소량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조·사용시설의 경우 "**일일취급량**"으로서 개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즉, 설계용량으로 소량기준을 적용.

소량기준 이상의 취급시설의 경우 일반 취급시설로 분류되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적용

## 9. 소량기준 대상여부(3)

**(질의 1)** 설치검사 대상 설비는 농도 4%미만의 과산화수소 희석조 (사용시설)이고, 일일 취급량이 표준설비에 속하며, 환기시설은 전역방식.

**(질의)** 농도 4%의 과산화수소 희석조에 덕트 등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질의 2)** 과산화수소(35%)의 물질 특성을 보면, MSDS 상에서 증기압은 23mmHg(30C°), 증기밀도 1.2로 증기 또는 미분발생 확률이 적음. 또한 급성독성(경구) 은 구분4에 해당하여 경구로 들어가는 독성노출의 가능성이 적음.

**(질의)** 설비 중 소분목적, 사용시설이 아닌 경우, 저장탱크 등과 같이 밀폐되어있는 설비의 경우는 덕트 등의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고 있음. 본 설비는 희석 용도로 쓰이는 사용시설이지만, 물과 과산화수소(35%)가 섞여 4% 미만으로 농도가 떨어져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 9. 소량기준 대상여부(4)

**(질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1개소,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 1개소가 있는 사업장이며, 향후 화관법 설치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

이런 경우에 사용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양이 표준장평이기 때문에 별표5를 적용 받아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보관창고 보관수량이 소량기준 미만이며 극소량 보관합니다. 이 경우 취급시설 검사 받을 때, 보관창고 부분은 별표5 항목이 제외되는지 ?.

**(답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에 따라 제조·사용시설과 저장·보관시설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보관시설은 소량 취급시설로 별도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9. 소량기준 대상여부(5)

(질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보면 하기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3조(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이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한 취급시설은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해당 지침의 [별표1]을 보면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소량기준의 1/2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음.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있는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 간이 제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량기준의 1/2을 적용하여 다시 소량여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 9. 소량기준 대상여부(6)

(답변)

질의하신 소량 취급시설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8-4호, 제3조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9-1호' 제3조 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이하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한 취급시설은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의 순서에 따라 판단.

따라서 간이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시설이 아니라면 소량기준 판단시 1/2을 적용하여 소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10. 소량 시설기준(1)

(답변)

설비에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인입농도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이라면 해당 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며, 일반 취급시설 중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출설비 설치 제외 대상은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설비는 밀폐설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불만족 민원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음.

(추가답변)

급성독성(과산화수소)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19-4호에 따른 [별표 1] 2.다.1)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10. 소량 시설기준(2)

(질의)

일 사용량은 40Kg를 넘지 않는데, 제조사용시설 내에 1톤 IBC Tank가 위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컨설팅 업체에서 표준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준해 2019년 4월 장외영향평가를 제출 진행은 완료된 상태

제조사용 시설 내 1톤 IBC Tank 이외 구역에서는 소량 상기 소량 취급기준으로 확인될 시, 감지 및 경보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림. 예를 들면, IBC Tank 주변은 10M 간격으로 누액감지기를 설치하고, 이외 구역은 감지 및 경보시설 설치하지 않음

(답변)

소량취급시설로 판단될 경우, 소량 제조·사용시설은 별도의 감지·경보장치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설치 의무사항은 아님.

# 10. 소량 시설기준(3)

(질의)

(질의1) 제조사용시설에 시약장이 있는 경우, 그 시약장 자체가 보관시설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2) 실험실 안에 시약장이 있는 경우 해당 실험실은 제조사용시설로 보는지? 보관시설로 보는지?

(질의3) 2번 항목과 연계하여, 제조사용시설로 본다면 시약장은 별도의 장소로 옮기고 보관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4) 2번 항목과 연계하여, 제조사용시설로 본다면 그 실험실 안에 격벽을 설치하여 별도의 룸을 만든 후 시약장을 옮기면 그 룸을 보관시설로 보는지? (제조사용 시설 내 격벽을 설치하여 보관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18-6호 별표 2 제2호 라.에 따라 개별용기 200L 이하의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의 경우에만 제조·사용시설(실험실) 내의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음. 이 경우 실험실과 수납장은 모두 제조·사용시설에 해당되며, 제조·사용시설로 검사를 진행. 개봉되지 않은 용기를 보관하는 수납장을 실험실 내에 설치한다면 실험실은 제조·사용시설, 수납장은 보관시설에 해당되며, 각각의 시설기준이 적용되고, 각각 검사를 진행해야 함.

제조·사용시설 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별도의 보관시설(수납장)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

## 10. 소량 시설기준(4)

(질의) 소량 보관시설에 트렌치나 집수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보관시설 소량기준을 보면 환기설비에 대한 내역은 있으나 트렌치 같은 내역은 없음.)

(답변) 소량 보관시설에는 트렌치 등의 별도의 확산방지시설 기준이 없으므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님.

(질의) 제조사용 화관법 표준, 보관시설 화관법 소량인 경우 방지턱을 설치해야 하나?

(답변) 소량시설의 하역시설에는 방지턱 등의 별도 기준이 없음. 보관시설이 소량 취급 시설이라면 하역시설에 방지턱 등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님.

## 10. 소량 시설기준(5)

**(질의)**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이하 취급시설로 위험물 옥외보관 시설 내에 구획 구분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하고 있음.

이러한 관계로 특정물질 누출 감지기 설치가 곤란하여 누출 감지기 설치 없이 CCTV로 대체 가능한지 ?

**(답변)** 소량 저장·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2 제3호 다. 별표3 제3호 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검지·경보설비 설치, CCTV 설치, 주기적인 순회점검 중 한가지로 관리하시면 됨.



감사합니다